

2025년 『청년취업 2000 사업』 참여기업 모집공고

지역 내 청년 고용 창출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5년 「청년취업 2000 사업」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5. 1. 15.
전 주 시 장

1. 공고개요

- 사업기간 : 2025. 1. ~ 12.
- 사업규모 : 10명
- 지원대상
 - 기 업 : 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, 월 급여액을 최저임금이상 지급 가능한 기업
 - ※ 전년도 참여기업은 기존 협약체결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일 경우 사업참여 가능
 - 청 년 :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이고,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참여기업에서 신청일 이전 6개월 미만 근무한 자
- 지원내용
 - 기 업 : 청년 채용 1인당 월 70만원씩 12개월간 지원
 - 청 년 : 취업장려금 최대 300만원 지원(6·12·24개월 경과 시 각 100만원 지급)
- 추진일정

참여기업 공개모집	》	참여기업·참여자 심사 및 확정	》	약정 및 협약 체결	》	사업추진
'25. 1. 15. ~ 1. 31.		'25. 2. 7. 한		'25. 2. 14. 한		협약체결 이후

※ 세부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있을 수 있음

2. 신청자격

- 참여기업 : 전주시 소재 *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외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고,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한 급여액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가능한 기업
 - 비영리법인·단체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
- *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참여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하며, 전년도 참여 기업은 협약체결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일 경우 당해 연도 사업 참여 가능

<제외대상>

- 소비 향락업 등
 - ① 『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』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(일반유희 주점업, 무도유희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갬블링 및 베틱업, 무도장 운영업 등)
 - ② 『청소년 보호법』 제2조제5호의 '청소년 유해업소', 『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』 제2조, 『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』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
- 국가 및 공공기관 등
-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
- 『근로기준법』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고용보험료 체납기업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(예,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- 학원(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속소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도로교통법」에 의한 학원)
- 숙박·음식업종 사업체(다만, 호텔업·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)
- 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- 『고용보험법 시행령』 제56조제2항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)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(최대 12개월)에 있는 사업주
- 청년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
-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청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
- 청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
- 청년의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- 사업 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-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%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하였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
-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
- 기타 청년 취업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

- 참 여 자 :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이고,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참여기업에서 신청일 이전 6개월 미만 근무한 자
 -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, 계약직·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,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취업 중인 자로 봄
 - ※ 보조금 지원 중 타 시·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중단

<제외대상>

-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관계에 있는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 - ※ 다만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- 청년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, 본인이 원하여 약정이 종료 해지된 자
 - ※ 다만, 청년이 원하여 해지된 경우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참여 할 수 있음
- 청년 취업신청일 이전, 6개월 이상 청년취업채용 예정기업에서 근무한 자
-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
-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
- 휴학생, 재학생
 - ※ 다만,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최종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, 야간학교 재학 중인 자는 참여 가능
- 기타 청년 취업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

3. 지원한도

- 참여기업은 당해연도 청년취업 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기업 상시근로자수의 40% 이내(소수점 이하는 절상)에서 채용 가능
-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정부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불가(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청년취업지원을 중단하며 향후 청년취업지원 및 신중년취업지원 참여 자격 배제)
- 단, 본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청년취업장려금 포기서약서 작성 시 참여 가능

4. 지원내용

- 수습기간 중 지원금 : 청년취업자 1인당 월 최대 70만원 지원
 - (지원기간) 수습기간 채용지원금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한 수습기간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
- 정규직 전환 시 지원금 : 청년취업자 1인당 월 최대 70만원 지원
 - (지원기간) '수습기간'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간 지원
 -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무수습 기간 만료일 전 15일 이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함

5.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의무 고용이행상황 등

- 보조금 지급 방법
 - 기업이 취업자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월 단위로 익월 5일까지 신청하면 근무상황 등을 확인 후 지원금 지급(매월 신청)
(예시) 2025년 3월 급여지급분에 대한 2025년 4월 5일 한 교부신청
 - ※ 지원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불가
 - ※ 4대 보험 체납 시 3개월 이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중지
- 보조금 지원기업 의무 고용 이행 상황
 - 보조금 지원 기간 동안 '협약체결 직전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또는 협약체결 당시 상시 근로자수'(취업참여자 미포함)를 유지하고, 보조금 지원대상 신규고용인 유지
 - 상기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가 있는 경우 추가채용 전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며, 3개월 이상 인원보충이 없을 경우 당해년도 지원중단
 - ※ 인원유지 여부는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으로 확인

6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- 신청기간 : 2025. 1. 15.(수) 09:00 ~ 1. 31.(금) 18:00
- 신청방법 :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
(방문접수)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, 기간 중 평일(9:00~18:00)
(등기우편) '25. 1. 31.(금)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
-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처 : 전주시청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
(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, 대우빌딩 8층)

<제출서류>

[필수]

- [서식1] 청년취업 채용신청서(기업용) 1부
- [서식2] 청년취업 운영계획서(기업용) 1부
- [서식4]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(기업용) 1부
- [서식8] 청년취업지원 협약서 2부
- 사업자등록증 1부
-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- 고용보험가입자목록('24년 10~12월(매월 말일 기준)) 1부

[청년취업 선발자 있을 시 추가제출]

- [서식3] 청년취업 지원신청서(참여자용) 1부
- [서식4]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(참여자용) 1부
- [서식5] 청년취업 선발자 명단통보서(기업용) 1부
- [서식6] 청년채용약정서 1부
- [서식7] 표준근로계약서 1부
- [서식10] 정규직명단 통보서(정규직 채용/전환 시) 1부
- 청년취업자 주민등록등본 1부

[선택] 증빙서류 제출 시 가점 처리(1개 이상 항목 제출 가능)

- 전년도 도·시군 취업박람회 참여기업
- 전년도 고용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교육생 채용기업
-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고용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기업
-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가족친화인증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, 여성기업, 청년친화강소기업
-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국가기관, 지자체에서 우수기업 또는 모범 기업 등으로 수상한 기업
- 전주시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(전주기업반 등)
- 직원복지 현황
 - 유연근무제, 육아휴직제, (배우자)출산휴가제도 운영 ☞ 복무규정, 사규 등
 - 성과급, 교통비(차량유지비), 정액급식비, 가족수당 운영 ☞ 사규, 급여대장 등
 - 휴게공간 운영 ☞ 휴게공간 사진

7. 기타 유의사항

- 해당사업의 신청기업은 사전에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,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정확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에 대한 일체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- 채용기업은 청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, 이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·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귀속함
- 청년취업자 채용기업은 해당 시와 「청년취업 지원협약」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
- 청년취업자 채용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, 기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음
 -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청년취업자를 채용코자 하는 경우
 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청년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부정 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청년취업 신규채용 금지기간 중 채용된 취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반납·환수함

< 「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벌칙규정 >

- . 제40조 :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. 제41조 :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

8. 문의처

-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주시청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(☎ 063-281-515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